

의안번호	제 173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1월 4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73
----------	-----

제출연월일 : 2023년 1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예우 및 애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 충청북도청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장례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청장의 대상자 (안 제3조)
- 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관장 사항 (안 제4조)
-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안 제5조)
- 집행위원회 구성 및 관장 사항 (안 제6조)
- 장례비용 지원의 범위 (안 제7조)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6. 비용추계서 : 불 입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사망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장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직원”이란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해(危害)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재직 중인 직원을 말한다.
2. “충청북도청장”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공무원 사망직원의 장례를 충청북도청장(이하 “도청장”이라 한다)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도청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사망 직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장례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도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충청북도(충청북도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2. 「충청북도 공무원 운영규정」에 따른 공무원

3. 「충청북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또는 「충청북도의회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제4조(장례위원회) ① 도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충청북도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되, 장례가 마무리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은 3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도청장 대상자의 유가족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장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사람은 공무원상 사망직원이 사망 당시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다.

1. 행정부지사

2.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충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의 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지사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청장의 대상자 여부 결정
2. 장례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집행위원회) ① 도청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장례비용) ① 도청장 또는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상 사망직원 1명당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노제 비용

2. 삼우제 비용

3. 사십구일제 비용

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으로 장례가 집행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수행 사망, 순직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가족장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관련 증빙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애도기간 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충청북도청 및 소속기관은 조기계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패용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무수행사망자”란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3. “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

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가장법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장례비용)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은 제외한다.

제6조(조기 게양)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 국가장법 시행령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2. 노제(路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 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국기의 게양일) ①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충청도민 체육대회 기간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
4. 그 밖에 충청북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충청북도 공무원 운영규정

제4조(직종의 구분) ① 공무원의 직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행정보조원: 서류정리·문서입력 등 사무업무, 컴퓨터 SW 및 HW 문제해결 업무, 도서관·자료실 도서 및 문서자료 관리업무, 통계 기록 정리 업무, 이공계·인문사회계 분야의 각종 연구업무 및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2. 현업실무원: 시설물·장비 관리, 농림수산 관련 현장작업, 공사작업 등 현업 업무, 방문고객 응대 및 매포 업무, 상담전화·민원사항 접수 등 서비스 제공 업무, 주차시설 관리 및 안내 업무, 식재료 준비 등 음식 조리에 종사하는 인력 또는 일일근무시간상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장인력
3. 조경관리원: 청사, 연구소 또는 관광시설 등의 수목 등 조경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4. 시설미화원: 사무실 등 건물 내외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5. 도로보수원: 도로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6.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인력
7. 청원산림보호직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인력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직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공무수행 중 사망한 소속 직원에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 명예롭고 경건한 장례의식을 집행하기 위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청장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결정을 위한 장의위원회 등의 개최와 장의(葬儀) 집행에 필요한 비용 보조 등 소요 경비

3. 관련조문

- 안 제5조(장례위원회)
- 안 제6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 안 제13조(장례비용)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 요인 : 도청장 1회 당 **장례비용 45,000천원** 정도 예상
- 추계의 전제 : 연중 1회
- 추계결과 :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연 45,000천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예비비)** ※ 비정기적 발생

5. 연도별 비용 추계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충청북도청장 장의비용	22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 비 용 추 계 서 】

(1회당 소요비용/원)

구 분	규 격	수 량	비 용(원)	비 고
합 계			45,000,000	
위원회 개최	소 계		2,500,000	
장례위원회	15명	1회	1,500,000	주요사항 심의결정
집행위원회	10명	1회	1,000,000	장례위원회 위임사항 심의
장의비용	소 계		42,500,000	
부 고	신문광고 3단,15cm이하	지방지	2,000,000	영결식 참석대상자 등
재단 장식비	3m * 1.2m 2단 장식	1식	2,000,000	
빈소 사용료	빈소	5일	4,000,000	빈소 및 접객실 사용료
안치 및 염습		1식	2,000,000	안치 5일, 염습료
수의 및 관		1식	2,000,000	
빈소 운영		1식	4,000,000	도우미, 상복, 제수비용 등
영결식장 단설치	면적 6m×3m 높이3.5m이내	1식	14,000,000	임시 구조물가설 현판 포함 (조문객 식사비용 대체 가능)
영구차·리무진	-	각 1대	1,000,000	1일간
조 화	대형	2개	400,000	도지사 명의
조 문 용 품			1,600,000	
- 헌화 꽃바구니	생화	2개	400,000	장의위원장, 유족대표
- 헌화용 꽃	국화	300송이	500,000	장의위원, 유족, 조객
- 흥 화		60개	200,000	장의위원, 유족
- 근조 리본	흑색	300개	200,000	조객, 종사원 등
- 장 갑	백색	100족	100,000	장의위원, 유족, 종사원 등
- 영구차 리본	대형	2조	200,000	영구차, 리무진
다과, 차재료	-	실수요량	500,000	장의위원, 조객, 종사원 등
안내문 인쇄	영결식 안내	500매	500,000	영결식 참석 조객 등
방송시설	-	1식	1,500,000	영결식장
기타 장의 준비	영결식 기자재	1식	3,000,000	장의용품 등
회장장 사용료		1식	1,000,000	
안장식		1식	3,000,000	안장식 행사 운영

* 장의지원 항목은 장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종 결정

** '20년 순직소방관 장의비용 : 40,000천원(장례식 10,000, 영결식 27,000, 안장식 3,000)